

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40일
법인명	대표자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
주소	전화번호	팩스번호

희망하는 지정기간(3년 이내)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2.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3.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. 고유번호증 1부(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)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법인명,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지정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만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, 지정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확인 → 지정여부 결정 → 지정서 작성 → 지정서 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: 게임물관리위원회